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서울특별시(재생협력과장)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(서울특별시, 개정 도시정비법의 적용 관련)

1. 귀 시 재생협력과-2244(2018. 2. 12.)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(이하 “도시정비법”) <법률 제14857호, 2017.8.9.>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‘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’의 의미

3. 회신내용

- 도시정비법 <법률 제14857호, 2017.8.9.>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부칙 중 ‘계약 체결’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사무관대우 하철호 시설사무관 김경은 주택정비과 과장 전결 03/08 유삼술

협조자